

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92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1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김재원 · 장종태  
김준형 · 이주희 · 서왕진  
신장식 · 이해민 · 박은정  
최혁진 · 차규근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증·응급, 소아,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, 고난도·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.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,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·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.

특히,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, 위험도, 시급성, 숙련도,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. 이에,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.

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·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,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·보완 지급,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

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 이를 통해 중증·응급, 소아, 분만,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, 지역·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47조의3).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3의 제목 “(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)”을 “(요양급여비용의 차등·보완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
2. 의료질 향상
3. 응급·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·보완 지급
2.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7조의3(요양급여비용의 차등<br>지급) (생 략) | 제47조의3(요양급여비용의 차등<br>· 보완 지급) ① (현행 제목 외<br>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br>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<br>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요양급<br>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<br>수 있다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의료질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응급·중증환자 등 생명직결<br>분야 육성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<br>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<br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<br>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<br>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·<br>보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<br>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<br>정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